

[서식 예] 문서송부촉탁신청(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)

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

사 건 2015가소ㅇㅇㅇㅇ 손해배상

원 고 이〇〇

피 고 정○○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

1. 입증 취지

원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.

2. 문서의 보관처

부천시청

주소 : (우편번호)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(중동 1156)

연락처: 032-320-3000

3. 송부촉탁할 문서의 표시

별지와 같음

2015. . .

위 원고 이〇〇

00지방법원 귀중



[별지]

송부촉탁할 문서의 표시 (부천시청)

1. 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래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〇〇〇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입니다.

성 명:정〇〇

주민등록번호: 021028-*****

주 소 : 부천시 오정구 〇〇〇

2.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고자 하 오니 다음의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위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

나. 위 사람의 부모의 각 주민등록표 초본

끝.



제출법원	수소법원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352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	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(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